



「2022년 국가직 7급 시험」 교정학 기출문제 및 해설(3)

| 이 준 교수 | 박문각남부고시학원

09.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의 접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이지만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- ㄴ. 수형자의 접견시간은 30분 이내로 하지만, 소장은 수형자가 19세 미만임을 이유로 접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ㄷ.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여야 한다.
- ㄹ. 외국인인 수형자는 국어로 의사소통이 곤란한 사정이 없더라도 접견 시 접견내용이 청취, 녹음, 녹화될 때에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
③ ㄴ, ㄹ ④ ㄷ, ㄹ

【정답】 ② 3월 6일(일) 기출 옳은지문 특강 p18 17번, 21번 완전 적중 / 3강 05:20~07:00
【해설】

- ㄱ.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9조의2 제2항(변호사와의 접견) 수용자가 제1항 각 호의 변호사와 접견하는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면, 이를 제58조 제3항(수형자의 접견횟수 매월 4회), 제101조(미결수용자의 접견횟수 매일 1회) 및 제109조(사형확정자의 접견횟수 매월 4회)의 접견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.
- 1.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: 월 4회
- 2. 「형사소송법」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: 사건 당 2회
- ㄴ. 동법 시행령 제 59조의2 제3항 소장은 제58조 제1항(근무시간 내 접견)과 이 조 제1항(변호사와 접견하는 시간 회당 60분) 및 제2항(변호사와 접견 횟수)에도 불구하고 소송사건의 수 또는 소송내용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소송의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, 접견 시간 및 횟수를 늘릴 수 있다.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의4(접견·전화)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나이·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87조(경비처우급별 접견의 허용횟수) 및 제90조(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)에 따른 접견 및 전화통화 횟수를 늘릴 수 있다.
- ㄷ.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접견

변호인과의 접견	미결수용자(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정자를 포함한다)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(법 제41조 제2항 제1호)
변호사와의 접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(법 제41조 제2항 제2호). • 수용자가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(시행령 제59조의2 제5항).
수용자와 미성년자인 자	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(법 제41조 제3항 제1호).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	<p>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(법 제41조 제3항 제2호, 시행령 제59조 제3항)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수형자의 교정성적이 우수한 경우 ②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소장이 특별히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
개방처우급 수형자	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이를 허용할 수 있다(시행규칙 제88조).

ㄹ. 동법 시행령 제60조(접견 시 외국어 사용) ① 수용자와 교정시설 외부의 사람이 접견하는 경우에 법 제41조 제4항(접견내용의 청취·기록·녹음 또는 녹화)에 따라 접견내용이 청취·녹음 또는 녹화될 때에는 외국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국어로 의사소통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.

10. 「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」상 성폭력 수형자의 치료명령 청구 및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교도소·구치소의 장은 가석방 요건을 갖춘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약물치료의 내용, 방법, 절차, 효과, 부작용,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② 가석방 요건을 갖춘 성폭력 수형자가 약물치료에 동의한 경우 수용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수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인적사항과 교정성적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수용시설의 장은 법원의 치료명령 결정이 확정된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.
- ④ 검사는 성폭력 수형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도소·구치소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등 성폭력 수형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.

【정답】 ④

2021년 9월 교정관계법령 특강 / 영상 24강 34:30~53:00

【해설】

- ① 「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」 제22조(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) 제2항 제5호
- ② 동법 제22조 제2항 제2호
- ③ 동법 제23조(가석방)
- ④ 동법 제22조(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) 제2항 제3호 검사는 소속 검찰청 소재지 또는 성폭력 수형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제5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.

11.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장은 법률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생후 24개월에 이르기 까지 허가하여야 한다.
- ②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이·건강 등을 고려하여 부인과질환에 관한 검사를 포함시켜야 한다.
- ③ 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상담 등을 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여성을 입회시킨 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④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(유산·사산을 포함) 후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【정답】 ①

3월 6일(일) 기출 옳은지문 특강 p26 3번, 5번 완전 적중 / 2강 29:20~41:20

【해설】

-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 제53조(유아의 양육)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,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.
 - 1. 유아가 질병·부상,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
 - 2. 수용자가 질병·부상, 그 밖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
 - 3.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
- ② 동법 제50조(여성수용자의 처우) 제2항
- ③ 동법 제51조(여성수용자 처우 시의 유의사항) 제2항
- ④ 제52조(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) 제1항



* 관련강의는 박문각온라인(www.pmg.c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